

서울북부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19가단124137 사해행위취소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1. B

2. C(개명 전: D)

3. E

4. F

변 론 종 결 2021. 1. 21.

판 결 선 고 2021. 2. 18.

주 문

1. 피고 C은 원고에게 7,855,239원 및 그 중 2,990,064원에 대하여 2019. 5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C과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10. 8. 체결된 증여 계약을 34,142,13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3. 가. 피고 B은 원고에게 34,142,1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나. 피고 E, F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34,142,132원 중 각 7,587,140원 및

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피고 C은 2012. 1. 10. 주식회사 H과 신용카드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. 피고 C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카드로 대출을 받았다. 그 후 피고 C은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연체하였다. 원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2013. 11. 15. 피고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(이하 '이 사건 제1대출금채권'이라 한다)을 양수하고 2013. 11. 22. 피고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, 2013. 12. 13. 위 신용카드대금채권(이하 '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'이라 한다)을 양수하고 2013. 12. 24. 피고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.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 254440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2014. 6. 26.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에게 7,316,845원 및 그 중 6,713,020원에 대하여 2013. 12. 5.부터 2014. 5. 30.까지는 연 1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2019. 5. 9.을 기준으로 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잔액은 7,855,239원(= 원금 2,990,064원 + 이자율 연 28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등 4,865,175원)이고, 위 대출금채권의 잔액은 13,931,072원(= 원금 6,713,020원 + 이자 등 7,218,052원)이다.

다. 피고 C은 2013. 5. 14. 주식회사 I과 대출금액 4,000,000원, 대출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각 38.90%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. 그 후 피고 C은 위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연체하였다. 위 은행은 2014. 11. 20.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(이하 '이 사건 제2대출금채권'이라 한다)을 양도하고, 2014. 12. 8. 피고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.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11403호로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이 법원은 2015. 3. 20.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에게 6,158,811원 및 그 중 3,812,149원에 대하여 2015. 3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.9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15. 4. 10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라. 2019. 5. 9.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채권의 잔액은 12,355,821원(= 원금 3,812,149원 + 이자 등 8,543,672원)이다.

마. 피고 C은 2014. 10. 8. 자신의 아버지인 G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한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2014. 10. 10.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바. G는 2019. 2. 26. 자신의 처인 피고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. 3. 6.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사. 피고 B은 2019. 6. 24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J 앞으로 공동근저당권을 설

정해 주었다.

아. 한편 G는 2019. 4. 3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(상속지분 3/9)과 자녀인 피고 C, E, F(상속지분 각 2/9)이 있다.

자.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(가액 63,228,000원) 및 인천 서구 K건물 L호(가액 110,000,000원)가 있었고, 소극재산으로 M은행(청산)에 대한 대출금채무(110,000,000원) 및 이 사건 제1, 2대출금채무 및 신용카드대금채무(합계 13,515,233원) 등이 있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, 12 내지 14, 1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N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(양수금 청구)

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고 C은 원고에게 양수금 7,855,239원 및 그 중 2,990,064원에 대하여 2019. 5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B, E, F에 대한 청구(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)

가.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제1, 2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, 위 각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, 위 각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여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여행위의 사해행위성을 부정할 수 없다(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,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고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에게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(110,000,000원 상당 K건물 L호)보다 소극재산(123,515,233원 이상의 금융채무)이 더 많아지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 C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, 수익자인 G 및 전득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.

3) 피고 B, F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)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선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G가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인데, 피고 C의 채무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압류되었고, 이에 피고 C의 채무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인의와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다시 G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. G 앞으로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기 전에 피고 B이 피고 C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도 하였으므로, 사실상 G와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나) 판단

피고 C의 채무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압류되자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 피고들 스스로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

나라, G가 사실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의 사해행위성을 부정할 수 없다.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1)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J 앞으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원고가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,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2)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 63,228,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9. 5. 9.까지의 피보전채권액 34,142,132원(= 7,855,239원 + 13,931,072원 + 12,355,821원) 중 더 적은 금액인 34,142,13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. 그리고 피고 B은 전득자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4,142,1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피고 E, F은 수익자인 망 G의 상속인으로서 전득자인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34,142,132원 중 각 7,587,140원(= 34,142,132원 $\times$ 2/9, 원 미만 버림)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명훈

별지

목 록

1. 전남 진도군 O 대 417㎡

2. 전남 진도군 O

[도로명주소] 전남 진도군 P

블록구조

샌드위치판넬외형글지붕

단층 단독주택

99.7㎡. 끝.